



제558호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

Certificate of International Forwarding Business

상호(Company Name): 주식회사 맥스피드

대표자(Name of Representative): 이 주 원

법인등록번호(Corporation Registration Number) 또는
주민(외국인)등록번호[Resident(Foreign)Registration Number]: 110111-0692122

주소(Business Address):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7, 3층
(도화동,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장학빌딩)

등록연월일(Registration Date): 1997년 6월 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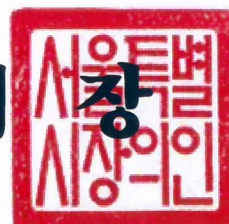
다음 신고기간(Registration Renewal Date): 2025년 8월 16일부터 60일 이내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This certificate confirms that the above company has registered as an
International Forwarding Business according to Article 43(1) of Logistics
Policy Framework Act and Article 6(2) of the its Enforcement Decree,
respectively.

2022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처리 알림 [주식회사 맥스피드]

1.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신고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알려 드립니다.

가. 등록기준 내용

등록번호 (등록일)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기준 (처리)일	차후 등록기준 신고기간
제558호 (1997.6.13.)	주식회사 맥스피드 (110111-0692122)	이주원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 7, 3층 (도화동,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장학빌딩)	2022.8.16.	2025.8.16.부터 60일 이내

2. 귀사에서는 향후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사항[상호, 자본금, 대표자(임원), 소재지, 국적] 변경 시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휴폐업 및 상속은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화물배상책임보험(또는 인.허 가보증보험)은 만료일 전에 갱신하여 원본은 물류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마다 60일 이내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등록증 참고)

3. 아울러 물류정책과에서는 등록기준신고사항을 확인하시어 행정지도(지원)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 및 등록기준 신고서 각1부. 끝.

서울특별시



수신자 주식회사 맥스피드, 물류정책과장, 인천세관장(화물물류감시과장), 인천세관장(공항수출입물류과장)

주무관 백진이 민원처리2팀장 08/13
한창욱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32518 (2022.08.15) 접수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민봉사담당관 (태 / www.seoul.go.kr
평로1가)

전화 02-2133-7920 /전송 02-768-8845 / bis8810@seoul.go.kr / 부분공개(6)